

대전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1050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지자람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6. 16.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2. 6. 선고 2019가단22813 판결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18. 1. 30. 접수 제9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1억 원을 2018. 9. 23.부터 매 3개월마다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같은 날 C의 대표이사 B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1억 2,000만 원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나. B은 2018. 1. 29.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30.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접수 제99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B에 대한 보증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근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B의 보증채무가 현실로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B의 무자력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는 B의 C의 주식 및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등을 포함하면 적극재산이 15억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다룬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의 C에 대한 가수금채권 및 주식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이 있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음이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기 전 C의 재무등급은 2015년 기준 BB-, 2016년 기준 CCC에서 2017년 기준 D 등급으로 매년 하향 조정되었다.
- ② 2017. 12. 31. 기준 C의 영업손실은 218,749,000원, 당기순손실은 472,460,000원에 이르렀고, 순자산 감소분(결손금)은 495,453,340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2018. 10. 17. 채무불이행상태로 등록되었다.
- ③ 한편 C는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 12. 31. 기준 토지와 건물 등 비유동자산을 비롯하여 54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으나 그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본금 5억 1,000만 원 외에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④ C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증자를 하여 보통주 102,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다. B은 전체 주식의 46.65%에 해당하는 47,583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 액면가는 237,915,000원이나, C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그 주식이 액면가 상당으로 거래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이에 달리 반증이 없다.
- 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1억 4,1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B은 원고를 비롯하여 E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 F카드, G에 합계 326,242,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피고는, B이 해지환급금 31,088,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 기재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B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무자력 상태에 있던 B이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모두 추정된다.

나. 선의 항변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8.경 B와 사이에 1억 원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하기로 한 돈 중 50% 이상을 현실로 지급하였을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9. 3.부터 2017. 12. 13.까지 B에게 합계 9,15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B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40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주장은 친척지간인 B에게 2015. 9.경부터 약 2년간 금전을 대여하다가 2018. 1. 29.에 이르러 반환받지 못한 돈이 5,000만 원이 넘자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사해의사 추정을 반복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깨트릴만한 선의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는바,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그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박세진, 판사 강지엽

별지

목 록

1. 충남 청양군 H 임야 2,714㎡
2. I 하천 2,013㎡. 끝.